



정 선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401호 2016. 11. 2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16-118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6-909호 「정선군청소년시설」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2
- 정선군 공고 제2016-928호 정선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입법예고 7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4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고시 제2016-118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
1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
2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년 11월 4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취지 : 신동읍 예미리 신동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·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군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로 신설

나. 위 치 :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48-2번지 (신동대체산업단지 내

다. 군관리계획(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1)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②	예미리 수질오염 방지시설	수질오염 방지시설	신동읍 예미리 248-2번지	-	증)854	854	-	일반 공업지역

○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②	예미리 수질오염 방지시설	· 군계획시설 신설 -A= 854m ²	· 신동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·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회 군계획시설로 신설

라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수질오염방지시설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
(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)

공 고

정선군공고 제2016-909호

「정선군청소년시설」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(안)

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「정선군청소년시설」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제3항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6조,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 제2항, 정선군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6년 10월 24일

정 선 군 수

1.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

- 시설의 명칭 : 정선군청소년수련시설 4개소(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, 사북청소년장학센터,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, 임계청소년문화의집),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
- 시설의 개요

시설명	소재지	부지면적(m ²)	시설규모	비고
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	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	3,97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회관 1층 (연면적 571.01m²) • 여성회관 2층 (키즈카페 225m²) 	
사북청소년 장학센터	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-6	4,14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하1~지상3층 (연면적 6,544m²) • 사북초교 사용면적 위탁제외(1층 80.43m²) • 키즈카페 211m² (증축 면적 포함) 	
신동청소년 아동장학복지센터	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27	5,49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하1~지상3층 (연면적 1,926m²) 	
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	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8	1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상2층 (연면적 482.66m²) 	
정선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	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-6	4,14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하1~지상3층 (연면적 128m²) 	사북청소년 장학센터내 설치

- 위탁내용 : 시설관리, 정선군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업무 전반 및 시설별 특화사업

※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, 사북청소년장학센터 : 키즈카페 운영

2. 위탁기간 : 2017. 1. 1. ~ 2019. 12. 31(3년)

3. 민간위탁비 (2017년 군비 지원 기준)

-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: 413,838천원
- 사북청소년장학센터 : 533,329천원
-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: 266,766천원
- 임계청소년문화의집 : 345,506천원
-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: 93,115천원

4.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

- 공고기간 : 2016. 10. 24. ~ 11. 14. (21일간)
- 접수기간 : 2016. 10. 31. ~ 11. 14. 18:00까지
 - 접수시간은 근무시간(09:00 ~ 18:00)에 한함
- 접수장소 : 정선군 여성청소년과(드림스타트팀 ☎ 033-560-2015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)

5.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

가. 신청자격(법인의 자격)

-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충족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.

<p>청소년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단체</p>

[근거 : 청소년기본법 제3조]

-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

[근거 :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]

-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

[근거 :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-6호[2005.04.08.(금), 관보 제15963호]

-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
-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 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
- 청소년학과·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(학교법인을 포함한다)

나. 결격사유

- 법인(단체)의 대표자, 운영 대표(예정)자
 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자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
- 법인(단체)
 -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
6. 위탁조건

- 보조금 이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법인(단체)이 부담하고,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년 지도사 및 운영요원 등을 확보하여야 함
- 수탁단체는 다음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, 위·수탁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 - ▶ 청소년기본법, 청소년활동진흥법, 청소년복지지원법, 청소년보호법,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 등 관련법령, 조례, 위·수탁협약서 등 준수
- 수탁법인(단체)는 현직자의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정선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야 함
- 시설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공간 및 시설별 특화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,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로 사용을 금함
-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시설 사용 요구 시 언제든지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
- 조직구성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은 조례 제22조제2항 적용
- 기타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협약으로 정함

7.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

- 구성인원 : 9인이내(학계, 법률, 회계 및 청소년전문가 등)
-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개최
 - 일 시 : 2016. 12. 9(금) 14:00 예정
 - 장 소 : 정선군청 소회의실
 - 심사진행 : 제안설명 20분, 질의·응답 개별 심사 점수 합산
 - 심사기준 :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·최저 점수 각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
(동점인 경우는 단체의 적격성, 시설운영계획, 시설 및 지역 이해 분야 순)
- 주요 심사내용(100점 만점) : 세부 심사기준은 붙임 참고
 - 수탁자의 적격성(기관의 운영기반, 사업수행 실적 등)/ 20점
 - 시설운영능력(사업계획, 시설경영의 타당성 및 적절성, 지역사회연계·협력 가능성 및 적절성/60점
 -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이해(지역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, 수탁목적의 타당성, 중장기발전 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) / 20점

8. 위·수탁 협약체결

- 일 시 : 2016. 12월중
- 장 소 :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
- 체결방법
 - 별도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(비용은 수탁단체 부담)
 - 선정된 법인(단체)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
- 위탁 선정된 법인(단체) 임무
 - 위·수탁운영 협약 체결 전 시설운영 세부계획 수립
 - 위·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

9.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

-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청소년시설 수탁운영 신청서
- 나. 설립인가(등록)증 사본1부
- 다. 법인(단체)등기부등본1부
- 라. 법인(단체)정관 사본 1부
- 마. 법인(단체)기본재산 현황 1부
- 바. 수익사업 현황 1부
- 사. 청소년시설 운영계획서 : 사업계획서, 운영인력 확보계획, 수입·지출예산서
- 아. 법인(단체)의 청소년사업 실적(수탁 운영 실적), 지역사회 기여도 등
- 자. 운영대표자 이력서,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자료 1부
- 차. 최근 3년간 사업운영실적 1부

10.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

- 각 시설별로 위탁 운영단체 선정 원칙
- 운영대표자 자격기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8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
 -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,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, 임계청소년문화의집 :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 - 사북청소년장학센터 :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
 -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: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4항 적용
- 민간위탁사업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함
 - 신청자가 2개 이상의 단체일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
 - 신청자가 1개 단체일 경우 심사위원회 적합 여부로 결정
 -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 모집
- 선정시기 : 선정심사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
- 민간위탁사업적격자 선정 발표 : 심사 후 서면통보(개별)
-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적격자의 법인·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협상

11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서류는 상기순서에 의거 A4규격으로 편철하여 증빙서류 포함하여 11부(원본 1부, 사본 10부)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인쇄제본은 좌철로 하고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후 열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합니다.
-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법인(단체)은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,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수탁운영 신청법인(단체)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(단체)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, 불참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정 양식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(☎033-560-201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1】

정선군 청소년시설 수탁운영 신청서

(접수번호 :)

시설명		
신청자	법인(단체)명	
	주소	
	성명(대표자)	
법인(단체)설립근거		
재 산	계	백만원(동산 : 백만원, 부동산 : 백만원)
수탁운영조건	공고문 기재사항으로 같음	

「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청소년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16 년 월 일

신청자 주소 :

법인(단체)명 :

대 표 자 :

정선군수 귀하

구비서류

1. 법인(단체)현황

설립인가(등록)증 사본, 법인(단체)등기부등본, 법인(단체)정관 사본

법인(단체)기본재산 현황, 수익사업 현황

2. 청소년시설 운영계획서 : 사업계획서, 운영인력 확보계획, 수입·지출예산서

3. 법인(단체)의 청소년사업 실적(수탁 운영 실적), 지역사회 기여도 등

4. 운영대표자 이력서,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자료

5. 최근 3년간 사업운영실적

정선군 공고 제2016-928호

「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」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6년 11월 1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『사도법 시행규칙』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주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사도의 구조는 「농어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리도(理道) 이상의 도로구조 기준에 수준이 되도록 규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정선군수(안전건설과장)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정선군수 안전건설과

- 연락처 : 전화(033-560-2487), 팩스(033-560-2099)
- 주 소 : (23161)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건설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자치법규명 :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
 - 성명(단체명):
 - 주 소:
 - 연 락 처:

개정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건	비고
	찬 성	반 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

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도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도의 구조) 사도의 구조는 「농어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
제3조(사도의 관리)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